

근골격계질환 예방 법 및 기준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유해요인조사<보건규칙 제143조>

조사내용 :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정기조사 : ·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실시
·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수시조사 : 지체없이

1.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부담작업 유무에 관계없이)
2. 부담작업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시
3. 부담작업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변경 시

※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근로자 입회

유해요인조사 방법<제144조>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유해요인조사 결과의 처리<제145조>

근골격계질환 발생우려 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 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 용어정의<제142조>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 03. 7. 15

1. 집중적 키보드 또는 마우스 조작 작업(4시간)
2.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사용 반복작업(2시간)
3.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진 상태 작업(2시간)
4. 목, 허리를 굽히거나 트는 상태의 작업(2시간)
5.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2시간)
6. 1kg이상 한손의 손가락으로 잡는 작업(2시간)
7. 4.5kg이상 물건 한손으로 드는 작업(2시간)
8. 25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10회)
9. 10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25회)
10. 4.5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2시간)
11. 손 또는 무릎 타격작업(2시간, 시간당 10회)

◇ 중량물취급에 대한 특별조치

제149조(중량물의 제한) 과도한 중량으로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 의무
제150조(작업조건)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적정배분
제151조(중량의 표시 등) 5kg 이상 물품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1. 작업장 주변에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안내표시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손잡이
부착, 갈고리, 진공빨판 등 활용
제152조(작업자세 등)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작업자세 교육

의학적 조치<제146조>

- ① 근로자의 통지
운동범위 축소, 의력저하, 기능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경우 사업주에게 통지
- ② 사업주의 조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및 작업환경개선 등 조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제148조>

① 대상사업장

1. 근골격계질환자 10인 이상 발생,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시간 이견 지속으로 노동부장관 명령 시

※ 예방관리프로그램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

② 작성·시행 시 노사협의를 거쳐야함

유해성 등의 주지<제147조>

-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 종사 시 유해성 등 주지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시설 사용방법
 5. 그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②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결과 등을 근로자에게 알림